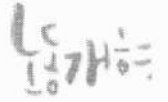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자 (재)서울문화재단 귀중
 (경유)
 제목 시정명령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청에서 2015.11.25. 귀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확인되어 행정조치(과태료)하였 으니 향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2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금액이 중과(근로자 1명당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선 결	대표이사	인사팀		결	정책보좌관	X
일 수	2015. 12. 08.	번 호	15-1871	개 · 공	본 부 장	전결
과	서울문화재단 교육지원팀	담당자	최원희	람	팀 장	강재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양승원 과장 오만석
 전결 2015. 12. 4.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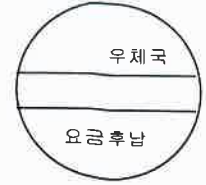
시행 산재예방지도과-10542 (2015. 12. 4.) 접수
 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6층, (장교동, 장교빌딩) / seoul.moel.go.kr
 전화 02-2250-5774 전송 02-2234-5986 / swanboat@korea.kr / 비공개(5,7)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이 열려갑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중구 상일대로 363 장교빌딩

100-760



납입고지서 재증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
5-67번지

0 2 5 8 9

부과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산출근거	
1. 일반건강진단 미 실시 근로자 1,512명 - '11년 278명, '12년 378명, '13년 395명, '14년 461명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01-19-1500-0437-5151-629		
납부자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실명번호	110122-*****
주소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번지		
세목	납기내	납기후	
	2015년 12월 18일		
과태료	8,000,000 원		
합계금액	8,000,000 원		

위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금액을 정히 영수 합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담당자 :

2015년 12월 0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년 월 일

수납인

안내 말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www.giro.or.kr(또는 인터넷뱅킹)→국세/법칙금(또는 공과금)→기금 및 기타국고→납부번호 입력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01-19-1500-0437-5151-629				
회계년도	2015	회계	일반회계	소관	고용노동부
납부자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실명번호	110122-*****	
금융기관	징수관계좌	세목 (563)	납기내	납기후	
			2015년 12월 18일		
001	000437-0	과태료	8,000,000 원		
합계금액			8,000,000 원		

위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담당자 :

2015년 12월 0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납인

<의견진술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사실 및 의견진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고지서 "합계금액"란의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미리 감경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5.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 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미성년자

6. 우리청(지청)에서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앞쪽 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우측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까지 의견제출 없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경전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

※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 없음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통지받은 위반행위(위반사실)

--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지청)장 귀하